

수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5457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무

피 고 A

변론 종결 2021. 3. 24.

판결 선고 2021. 4.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16. 4.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4. 20. 접수 제341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14. 7.경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미납하였는데, C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2016. 6. 10.경 D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C 주식회사는 2016. 6.13.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D 주식회사는 2016. 7.경 B를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양수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차전9418호). 위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16. 7. 26. "B는 D 주식회사에게 6,946,168원 및 그 중 6,417,447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5. 확정되었다.

3) D 주식회사는 2016. 11. 18.경 위 2)항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12. 7.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는 2016. 4.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4. 20.접수 제34164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B에 대한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B가 2014. 7.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이용함으로써 바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전에 성립된 위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그 시가는 95,000,000원에서 105,000,000원 사이로 평가되며, B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B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을

63,8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5. 채권자를 F 주식회사, 청구금액을 13,147,501원으로 한 가압류등기, 2016. 7. 18. 채권자를 주식회사 G, 청구금액을 10,544,765원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 합계가 23,692,266원에 이르는 점, 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B는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6,946,168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피고에 대하여 약 29,900,000원(대여금 원금 26,000,000원 + 이자 3,9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피고는 2021. 4.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각가압류등기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각 가압류채권액 상당의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시점과 인접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무렵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가압류등기의 각 가압류채권액 상당의 채무도 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 담보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5. 12.경까지 B에게 약 24,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B가 2016. 4.경 추가로 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그 전까지의 차용금과 이자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고 2016. 4.경 2,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5. 28. 선고2015다2553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조적조 36㎡ 지층 7.45㎡.

소유권대지권 2648분의 32.283. 끝.